

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, 민간 벤처모기금(펀드) 제도 도입된다.

-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고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위한 ‘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’의 법적 근거 마련
-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정비, 세제 유인책(인센티브) 등 제도 활성화 추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벤처투자법”이라 한다.)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됐다고 밝혔다.

* 국무회의 의결(4월 11일) → 공포(4월 18일 예정) → 시행(공포 후 6개월 후)

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,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·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·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‘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’ 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.

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회사,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하였다. 중소기업부부는 대규모 기금(펀드) 운용 경험과 역량,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투자사(벤처캐피털)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.

②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(예 : 60%)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, 소규모 기금(펀드)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(예 : 1,000억원)를 규정할 계획이다.

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%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(최대 40%)하고, 사모기금(펀드)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.

또한,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·소득 공제,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, 조합의 창업·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유인책(인센티브)도 추진된다.

이영 장관은 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기금(펀드)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·창업기업(스타트업)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연학 (044-204-7711)
		담당자	주무관	오선혜 (044-204-7718)



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
2.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제51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4.~10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-----
-----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-----

2. 제50조의제2항,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-----

3.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-----

4.~10. (현행과 같음)

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2.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,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,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.
 -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

<p>2. 제10조, 제13조, 제26조, <u>제38조 및 제51조</u>에 따른 투자 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</p> <p>3.~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8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9조제1항 후단, 제12조제1항 후단, 제24조제1항 후단, 제37조제1항 <u>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</u>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</p> <p>2.~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-----<u>제38조, 제51조 및 제63조의2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0조(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후단,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* 하위법령은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정비하여 시행